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10. 3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2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91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4년 10월 31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세열

가. 제안이유

-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라 실시하고 동 복무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직원의 경조사 휴가 대상 및 휴가 일수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에서 정하고 있으나,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평균 휴가 일수보다 적어 이를 개선하고자 경조사 휴가 대상을 확대하고 휴가 일수를 조정(신설, 확대)하여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있는 특별휴가 일수를 실시하고자 하며,
- 또한, 2014.6.30.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 한 번에 두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,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·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휴가 신청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, 유산·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44일(한 번에 두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)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가. 경조사 휴가 대상 확대 및 휴가 일수 조정(안 제24조제1항 별표)

=>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평균 휴가 일수로 확대 및 신설

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: 1일 신설
-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: 2일 => 3일 확대
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: 1일 신설
-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: 1일 신설

나. 출산휴가 일수 확대 및 분할 사용(안 제24조제2항)

=>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사항 반영

- 한 번에 두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
-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·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, 유산·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44일(한 번에 두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)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.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김은모)

○ 동 조례안은 우리 구 복무조례의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평균 경조사별 휴가일수 보다 적어 이를 개선하고자 경조사 휴가 대상은 확대하고 휴가 일수는 늘려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있게 경조사 휴가 일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

가) 경조사 휴가 대상 확대 => 결혼 경조사 휴가는 1)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사망 경조사 휴가는 1)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, 2)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대상을 확대하고

나) 휴가 일수 확대 => 1)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를 2일 => 3일로 확대하고

다) 휴가 일수 1일 신설 => 1)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, 2)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, 3)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

=>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은 적법하다고 사료됨.

○ 동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한 번에 두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시행하고,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·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등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(한 번에 두 명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59일)의 범위에서 출산을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임신·출산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됨.

○ 동 조례안은 2014. 9. 18. ~ 10. 8.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으며, 또한 이번 조례는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있는 직원 휴가일수 조정 및 상위 관계법령 등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